

진술조력인의 역할 제고방안*

A Study on Enhancing the Role of Statement Assistant

김 창 군** · 김 유 정***

Kim, Chang-Kuhn · Kim, Yu-Jeong

목 차

- I. 서론
- II. 진술조력인의 개념
- III. 진술조력인의 의무와 역할
- IV. 진술조력인의 역할 제고방안
- V. 결론

국문초록

진술조력인제도는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실제적 진실발견에 기여하고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정의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2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고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에게만 있는

논문접수일 : 2018.06.30.

심사완료일 : 2018.07.26.

게재확정일 : 2018.07.26.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법학박사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주저자)

*** 변호사 · 호남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조교수(교신저자)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진술조력인제도를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도입한 주요 선진 국가들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진술조력인제도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이 논문에서는 진술조력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진술조력인의 역할 제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진술조력인의 역할 규정을 개정하여 ‘의사소통의 중개 또는 보조를 통한 원활한 조사 또는 원활한 증인신문’ 외에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통한 피해자의 제2차 피해방지 역할’을 명문화해야 한다. 둘째 진술조력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진술조력인의 중립의무는 매우 중요하므로 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립의무를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진술조력인 양성 및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해바라기센터 등 아동학대나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관련기관에서 상근하는 진술조력인의 수를 대폭 증원해야 하며, 진술조력인의 자격은 주무부처가 관리·감독하되 교육훈련 및 자격심사, 보수교육, 심사와 평가는 민간영역에 위임·위탁함으로써 자발적인 자질개선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진술조력의 대상범위를 아동학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아동·장애인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모든 범죄의 피해자, 증인은 물론, 피의자, 가해자에게 확대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일반적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진술조력인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야 한다.

주제어 : 진술조력인, 아동학대, 장애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립의무, 의사소통의 중개, 증인, 피의자, 가해자.

Ⅰ. 서론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하 ‘장애인’으로 약함)¹⁾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기

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조사환경, 조사자의 질문양식, 조사자의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이해수준, 보호자의 사건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진술의 양과 질에 큰 편차를 보일 수 있다.²⁾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복잡한 질문을 받을 때 특히 불리할 수 있다.³⁾ 그러나 형사절차 참가자(경찰, 변호사, 판사 등)가 이들과의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⁴⁾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그들이 가진 의사소통과 기억력 등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형사절차에서 그들의 진술이나 증언을 토대로 공소를 유지하거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됨은 물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경험하기도 한다.⁵⁾ 그렇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와 형사사법기관 간의 의사소통을 증개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적극적인 피해자 권리보호제도가 필요하

-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약칭함)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장애라고 하면서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15가지 장애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 2) 김태경·이영호,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양상", 「한국심리학회지(임상)」 제29호, 한국임상심리학회 2010. 2, 302면.
- 3) 특히, 어린 아동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질문방식이 중요할 수 있으며, 아동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이 있는 진술조력인이 아동의 의사소통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Hanna, Kirsten/Davies, Emma/Henderson, Emily/Hand, Linda, "Questioning Child Witnesses: Exploring the Benefits and Risks of Intermediary Models in New Zealand",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Vol.20 No.4, 2013, p.539).
- 4) Hepner, Hana/Mary N. Woodward/Jeanette Stewart, "Giving the Vulnerable a Voic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Use of Intermediaries with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Vol.22 No.3, 2015, p.455.
- 5) 형사사법 기관의 아동 및 장애인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 사례가 마스크를 통하여 보고되고 있는 바, 예컨대 수사관의 유도질문으로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이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경향신문, "경찰조사관이 유도질문...법원, 성폭력 피해 아동진술 또 배척", 2013.4.29.). 1995년부터 2012년 8월까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진 강력사건 540건 가운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된 경우는 266건이었는데, 이 중 성폭력범죄가 240건에 이른다고 한다(박종선, 「진술조력인 역할모델 정립」(연구용역보고서), 법무부, 2013. 6, 2면; 김상준,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 항소심의 파기자판 사례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2, 16면).

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⁶⁾

이러한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의 보호와 관련한 연구와 노력의 성과로서, 2010년 4월 15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으로 약칭)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폭력방지법’으로 약칭)이 제정되었고,⁷⁾ 2012년 12월 19일 ‘성폭력처벌법’ 전부개정(시행 2013.12.19.)을 통하여⁸⁾ 모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제27조),⁹⁾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동법 제35조부터 제39조).¹⁰⁾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약칭) 제17조에서도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6) 대표적인 연구로서, 이재상,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피해자학연구』 창간호, 한국피해자학회, 1992. 11, 38면; 정현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6, 162면 이하; 최병호,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4, 53면; 조준현, “형벌론과 형법이론학에 있어서 피해자의 체계적 지위 소고”,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8, 356면; 류전철, “개정 형사소송법에 투영된 피해자 상”,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8. 10, 62면; 박광민, “피해자참가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10, 24면; 장승일,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7집, 한국법학회, 2010. 2, 219면 등이 있다.

7) 한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 제1항은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당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 근거한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도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 강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정책과제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에의 참가권 보장과 범죄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조력으로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2012, 15-16면).

8) 개정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희경, “성폭력범죄 피해실태와 개정법상 피해자보호 및 지원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3. 10. 참조.

9) 법률조력인제도는 2012년 3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약칭함)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에게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하여 겪는 어려움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음 도입된 것이다.

10)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도 장애인이 수사절차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처우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특별히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박찬운, “수사절차에서의 장애인의 인권 : 신뢰관계자 동석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7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3, 112면 이하).

진술조력인제도는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영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진술조력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진술조력인제도가 시행된 지 5년 정도 되는 현시점에서 진술조력 대상의 확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진술조력인의 개념, 진술조력인의 의무와 역할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진술조력인의 역할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진술조력인의 개념

1. 진술조력인의 의의

성폭력 사건에서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데 성폭력 피해자가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진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¹¹⁾

진술조력인제도는 성폭력범죄의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 진술능력이나 방어능력이 취약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법률지원만으로는 그 보호가 충분하지 못함에 따라 전문적 자격을 가진 진술조력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립적 지위에서 조력하는 제도라 할 것이다.¹²⁾ 진술조력인제도는 피해아동이나

11) 도중진,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제도의 실효화방안”, 「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6, 36면; 이미경, “성폭력 법·정책을 통해 본 피해자의 권리 : ‘성폭력수사·재판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6권 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4. 6, 81-82면; 이희경, 전계논문, 239면.

12) 김정혜, “진술조력인의 의의와 역할 : 성폭력 범죄 피해 장애인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6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6, 35-36면; 박종선, “진술조력인제도의 시행과 향후 과제”, 「경희법학」 제48권 제4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2, 395면; 이진국, “진술조력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9, 32면; 정현미,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제도”, 「이

장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할 때 단순히 동행하거나 동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2차 피해와 스트레스장애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과 교육훈련을 받은 전문가인 진술조력인이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를 동행하여 지원한다는 점이 중요하다.¹³⁾ 이점에서 진술조력인은 모든 형사절차 참가자(예컨대 변호사, 경찰, 검사, 판사 등)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부담과 고통을 인식하여 피해아동이나 장애인의 연령 등에 적합한 법지식과 극복전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아동이나 장애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¹⁴⁾

2. 유사제도와와의 구별

진술조력인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도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피해자보조인제도가 있었다.¹⁵⁾ 그러나 이 제도는 자격요건을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으로 규정하여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며, 보조인에게는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것 외에 다른 권한이 없고 근거규정도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고 수화통역 정도의 보조가 거의 전부인 실정이었다.¹⁶⁾

화젠더법학」 제4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2. 6, 18면.

- 13) 김태경 외, “성폭력 범죄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의 한국형 역할모델”, 「피해자학 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3. 6, 202면; 도중진, 전계논문, 37면; 이진국, 전계논문, 34면; Fastie, Kinder und Jugendliche als Verletzte von Sexualdelikten, Misshandlung und häuslicher Gewalt auf dem Weg durch das Strafverfahren, in Fastie(Hrsg.), Opferschutz im Strafverfahren, 2008, S.27.
- 14) 박종선, 전계논문, 396면; 이진국, 전계논문, 34면; 임희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검토”, 「이화젠더법학」 제5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3. 12, 192면; 정현미,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입법방향”,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제도 입법공청회 자료집」, 법무부, 2012. 6, 56면; 조상제, “독일의 성폭력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한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4. 7, 283면; Fastie, a.a.O., S.28.
- 15) 예컨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7.28.)’ 제10조 제2항 및 제75조 제2항,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774호, 2015. 8. 28.)’ 제62조 및 제222조 제1항, 제3항, ‘13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조사지침(대검강령 제61100-732호, 2004. 3. 12.)’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등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보조인’ 또는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등의 보조를 허용하고 있다.

2007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증인을 위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임의적으로 허용하면서도 범죄피해자가 13세미만 이거나 심신미약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도록 규정하여 ‘필요적 동석제도’를 도입하였다.¹⁷⁾ 개정 형사소송법은 종래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만 인정되었던 신뢰관계인 동석제도¹⁸⁾를 일반범죄 피해자에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신뢰관계인도 진술조력인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¹⁹⁾ 그러나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은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²⁰⁾ 즉 신뢰관계인은 범죄피해자와 동석만 할 수 있을 뿐 공판정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진술할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신뢰관계인이 공판정에서 피해자증인을 위하여 행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로 인정되지 않는다.²¹⁾ 또한 피해자와 일정한 신뢰관계만 있으면 신뢰관계인이 될 수 있다.²²⁾

- 16) 김정혜, 전계논문, 63면; 도중진, 전계논문, 38면; 김현진, “경찰수사절차에서 신뢰관계자 동석에 대한 연구 :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6. 332면 이하; 조균석,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보호제도의 운영실태와 그 평가”,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6권 제2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4. 12. 69면.
- 17) 이에 대하여 수사절차상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는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다.
- 18) ‘성폭력특례법’ 제34조와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도록 명시하고 있다.
- 19) 양자 모두 피해자 참고인 또는 피해자증인의 심적·정신적 불안감을 해소하여 이들이 제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이기 때문이다(이진국, 전계논문, 35면; 도중진, 전계논문, 39면).
- 20) 법무부, 「2013년 진술조력인 업무 매뉴얼(안)」, 2013, 58면; 박종선, 전계논문, 396면; 이진국, 전계논문, 35면. 다만, 신뢰관계인의 범주에 진술조력인을 포함시켜 기존 제도와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염형국,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방안 토론”,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제도 입법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 2012. 6. 110-111면이 있다.
- 21)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참조.
- 22) 현재 신뢰관계자로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보호자, 원스톱지원센터의 상담자, 피해자지원기관의 사회복지사, 피해자 국선변호인(구 법률조력인) 등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보호자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처음 만나 피해자 옆에 동석하게 되는 등 진정한 의미에서 피해자의 심신안정을 위해 조력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박옥숙, “법률조력인과 함께한 1년, 피해자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 성과 평가와 제도적 발전방향” 「심포지엄 자료집」,

이에 반하여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와의 동석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이나 법원의 증인신문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증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진술조력인은 사회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형사법과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²³⁾ 나아가 진술조력인의 조력은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임에 반하여 신뢰관계인의 조력은 피해자의 임의에 맡겨져 있고 국가에서 선임하거나 비용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차이가 있다.²⁴⁾

Ⅲ. 진술조력인제도의 주요내용

진술조력인제도는 ‘성폭력처벌법’ 제35조-제39조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에서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²⁵⁾ 그리고 진술조력인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에 관한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827호, 2014. 10. 13. 제정, 이하 ‘진술조력인 선정규칙’)으로 약칭)²⁶⁾과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에 관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555호, 2014. 9. 29. 시행, 이하 ‘성폭력범죄 등 사건심리·재판규칙’)으로 약칭)²⁷⁾에 위임하고 있다.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2013. 4, 88면; 박종선, 전계 연구용역보고서, 23면).

23) 도중진, 전계논문, 40면; 정현미, 전계논문, 88면.

24) 박종선, 전계논문, 396면; 이진국, 전계논문, 36면.

25)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29조를 각각 준용하며, 이 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26) ‘성폭력처벌법시행령’상의 진술조력인 선정절차 조문들을 삭제하면서 새로 제정된 ‘진술조력인 선정규칙’은 진술조력인의 교육, 자격 부여, 선정 및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절차규정을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에 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27) 대법원규칙은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절차(제17조-제21조), 진술조력인의 좌석(제22조), 진술조력인의 증개·보조절차(제23조-제2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진술조력인의 자격과 의무

(1) 자격

법문상의 진술조력인은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아동이나 장애인의 진술 및 행동특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증개 또는 보조함으로써 실제적 진실발견에 기여하는 사람을 말한다(‘성폭력처벌법’ 제35조 제2항 제1문, 제36조 제1항 본문, 제37조 제1항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

진술조력인의 자격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35조 제2항은,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항 후반에서는 “진술조력인의 자격이나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다.²⁸⁾²⁹⁾

(2) 의무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진술조력인에게는 ‘중립의무’와 ‘비밀유지의무’가 주어지고 있다. 동법 제38조 제1항은,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함

28) 법무부령인 ‘진술조력인선정규칙’에 의하면, “1.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임상심리학, 언어병리학, 정신병리학, 발달정신병리학, 발달심리학, 심리치료, 언어치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3.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수사자문위원 또는 전문심리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동 규칙 제4조).

29) 진술조력인 양성교육과정에 관하여는 “1. 사법절차 과정, 2. 아동·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과정, 3. 실습 과정이 포함된 내용을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동 규칙 제3조 제1항).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 대상자, 즉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수사자문위원 또는 전문심리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교육과정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동 규칙 제3조 제2항).

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 제1항)고 하여 중립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진술조력인의 중립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면담하거나 검사할 때 조사관·상당사 등 제3자를 동석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⁰⁾ 진술조력인은 사전평가를 포함하여 자신이 진술조력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자신이 조력을 맡은 사건에 대해 진술자의 진술 신뢰성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없다. 그리고 진술조력인은 전문가 증인으로 활동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사건에서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전문가 증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는 없다.³¹⁾

2. 진술조력인의 역할

(1) 수사과정 참여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진술조력인은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³²⁾ 수사과정, 특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증개하거나 보조

30) 법무부, 전계 2013년 진술조력인 업무 매뉴얼(안), 66-73면 참조.

31) 도중진, 전계논문, 43면; 김태경 외, 전계논문, 203면. 한편 ‘성폭력처벌법’도 제33조(전문가의 의견조회)와 제35조(진술조력인의 양성 등) 제2항에서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32) ‘진술조력인 선정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그 밖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정서적 불안, 함묵증, 진술회피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렵다고 검사 또

할 수 있다(동법 제36조 제1항).

‘진술조력인 선정규칙’은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증개하거나 보조하는 활동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즉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의 취지를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이 바뀌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질문을 변환하여 전달하는 활동,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의 의사표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20조 제4항 각 호의 내용³³⁾을 설명하는 활동,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20조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방법, 조사 계획 및 보조수단 등을 논의하거나 조언하는 활동, ④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얻고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조성하는 활동, ⑤ 그 밖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이다(동 규칙 제18조 제1항).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이후에 한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그의 의사표현적 특징 등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동조 제2항).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동조 제3항),³⁴⁾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동조 제4항).³⁵⁾ 다만,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검사·사법경찰관의 직권,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는 사법경찰관이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3) ‘진술조력인 선정규칙’ 제20조 제4항 각호의 내용은, “1. 인지기능, 진술능력, 비언어적 의사표시, 언어이해 및 표현 능력, 2. 정서, 성격, 심리상태 등 심리적 특수성, 3. 그 밖에 의사소통의 증개 또는 보조에 필요한 정보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요청한 내용”을 말한다.

34) 진술조력인이 제출하는 의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지기능, 진술능력, 비언어적 의사표시, 언어이해 및 표현 능력 2. 정서, 성격, 심리상태 등 심리적 특수성 3. 그 밖에 의사소통의 증개 또는 보조에 필요한 정보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요청한 내용(‘진술조력인 선정규칙’ 제20조 제4항).

35) 최종보고서에는 행동 관찰, 전반적인 인지 기능,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 집중력, 발음 명료도, 읽고 쓰는 능력,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정서 상태, 개인의 심리적 특수성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김태경 외, 전개논문, 205면; 도중진, 전개논문, 45면; 박종선, 전개 연구용역보고서, 51면).

변호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다(동조 제1항 단서).³⁶⁾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동조 제6항), ‘진술조력인 선정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

(2) 재판과정 참여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에 관하여는 ‘성폭력처벌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은,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증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증개 또는 보조하는 것’이다. 법원은 피해자증인이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인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동조 제2항).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동조 제3항), ‘성폭력범죄 등 사건심리·재판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의하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① 증인이 이해할 수 있는 증인신문의 방식,³⁷⁾ ② 증인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법원에 알리는 방식, ③ 그 밖에 진술조력인에 의한 증인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의 증개·보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사, 변호

3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증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6조 제2항).

37) 법원은 공판절차상 증인신문방식, 즉 공판정에 피해자증인이 출석하여 신문을 행하는 통상적인 증인신문방식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방식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하여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 제1항 및 제2항), 법원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증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때에는 진술조력인을 공판정 외부에 설치된 증언실에 동석하게 한다(‘성폭력범죄 등 사건심리·재판규칙’ 제26조 제2항).

인 및 진술조력인과 협의할 수 있다(동규칙 제23조 제1항). 증인신문 절차에서 진술조력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증인에게 질문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고(동조 제2항), 이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 취지를 질문하거나 신문사항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동조 제3항), 증인이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증인의 진술을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다(동조 제4항).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증인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을 중개·보조하는 경우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문이나 증인의 진술의 취지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동조 제5항). 재판장, 합의부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진술조력인의 중개·보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동조 제6항, 제7항, 제8항). 진술조력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한 때에는 공판조서에 진술조력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증인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제24조).

Ⅳ. 진술조력인의 역할 제고방안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권리는 피해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구성한다고 본다면 현행 진술조력인제도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국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제적 표준이며,³⁸⁾ 진술조력인제도를 피해자보호장치로

38) 진술조력인의 조력은 의사소통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서 당연히 피의자와 피고인에게도 인정된다. 이것은 이미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0조와 유럽인권협약(EU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제6조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4조 제1항에 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내재되어 있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무기평등의 원칙의 파생원칙이기도 하다. 예컨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항은 “형사소추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음의 최소한의 보장이 완전하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 (e)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권리와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라고 하고 있다.

도입한 주요 외국 선진국들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경향에 있다. 예컨대 영국은 ‘소년사법과 형사증거법 1999(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99)’에서 처음 진술조력인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해서만 인정되었으나 법률개정³⁹⁾을 통하여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의자·피고인에게도 진술조력인제도가 확대되었는데,⁴⁰⁾ 이러한 진술조력인제도의 확대는 영국 형사사법절차에서 가장 큰 변화의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다.⁴¹⁾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제고시켜 진술조력인제도가 활성화된다면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규명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1. 진술조력인 역할규정의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제35조에서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야 한다”(동법 제35조 제1항)라고 하여 진술조력인의 양성목적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제36조 제1항(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에서는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조사과정에 참여하여

39) 영국은 2012년 Regina v Anthony Cox 사건에서 법원이 “현행법이 피고인에게 진술조력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입법적으로 개정하게 되었다(Police and Justice Act 2006 §47; 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99에서 ‘Chapter 1A, Use Of Live Link For Evidence Of Certain Accused Persons’이 삽입되었다).

40) Criminal Procedural Rule 2015 §3.9(3)(b), 3.9(6), 3.9(7). Ministry of Justice,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2015, 12, p.17.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진술조력인은 일반적으로 “non-registered intermediary”로 지칭된다(Plotnikoff, Joyce/Woolfson, Richard, Intermediari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mproving Communication for Vulnerable Witnesses and Defendants, Bristol, Policy Press, 2015, p.247).

41) 즉 진술조력인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의사소통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혀 증거로서 인정되지 못했던 진술증거들이 진술조력인제도의 도입으로 새롭게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질문과 답변을 가능하도록 하여 증거의 질도 향상시켰다. 특히 공판절차에서 진술조력인, 법관, 검사 그리고 변호사가 사전에 교호신문의 내용, 방식 그리고 범위 등을 조율함으로써 의사소통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모니터링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의 방지에, 증인과 피의자·피고인의 경우에는 정확한 진술을 가능하게 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Plotnikoff, Joyce/Woolfson, Richard, op. cit., p.245).

의사소통을 증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제37조 제1항(재판과정 참여)에서는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하여...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증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진술조력인의 주된 역할이 수사기관 및 법원의 요청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형사절차상의 합목적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⁴²⁾

생각건대,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을 조사 전부터 면담을 통하여(‘성폭력처벌법’ 제36조 제3항), 피해자증인이 심리적 안정을 얻고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조성하는 등(‘진술조력인 선정규칙’ 제18조 제4항),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담당해야 한다.⁴³⁾ 즉 의사소통의 증개 또는 보조 이외에도 제2차 피해의 방지와 실제적 진실발견에 기여 또한 진술조력인의 역할이라고 해야 한다.⁴⁴⁾

그러므로 ‘성폭력처벌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의 진술조력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각각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또는 증인신문)를 위하여’라고 개정해야 한다.⁴⁵⁾

2. 진술조력인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피해자, 증인 또는 피의자나 피고인 등의 진술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서 사용되어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술조력인의 의사소통의 증개와 보조는 편견을 배제하는 객관적인 것이어야 한다.⁴⁶⁾ 즉 진술조력인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으면

42) 이 두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문리해석에 충실하면 ‘피해자에 대한 조력’보다도 ‘원활한 조사나 원활한 증인신문’이 우선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정혜, 전계논문, 78-79면; 도중진, 전계논문, 48면; 박종선, 전계논문, 416면).

43) 이진국, 전계논문, 43면.

44)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길잡이」, 2014, 51면.

45) 독일 Schleswig-Holstein주의 진술조력인제도는 형사절차와 관련한 피해자의 두려움을 없애고 각종 부담을 최소화하며 형사절차를 통한 제2차 피해자화의 위험을 줄이는 것에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조상제, 전계논문, 292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증개자는 의사소통의 증개역할 외에 적대적 반대신문으로부터 증인을 보호하는 등 증인과 증인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김정혜, 전계논문, 77면; 도중진, 전계논문, 48면).

서도 피해자, 증인 또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과 수사기관에 대하여 의무(의사소통의 정확한 중개와 보조)를 부담한다.⁴⁷⁾ 형사절차에서 진술조력인에게 중립의무를 부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의 권리보호라는 관점에서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의 의사 표현을 왜곡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적 진실발견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⁴⁸⁾ 즉 ‘성폭력처벌법’ 제36조 제4항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만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조력인은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예단하여서도 안 되며 단지 소추의 단서를 수집하기 위한 의견만을 제공하여야 한다.⁴⁹⁾ 이와 같이 진술조력인의 중립의무 준수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2항 제1호는 진술조력인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다.⁵⁰⁾

생각건대, 진술조력인이 중립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① ‘결격사유’에 의한 배제,⁵¹⁾ ② 진술조력인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제도, ③ 당사자의 기피신청 등을 통하여 애초부터 해당사건에서 배제

46) 참고로 영국의 경우 법무성은 ‘진술조력 인의 행동강령과 윤리강령(Part 1: The Registered Intermediaries Code Of Practice And The Code Of Ethics)’을 마련하여 진술조력인의 중립 유지의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https://www.cps.gov.uk/publications/docs>; Ministry of Justice,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2015, p.5.).

47) Plotnikoff, Joyce/Woolfson, Richard, op. cit., p.244.

48) 진술조력인의 중립적 지위에 초점을 두고 조력인이라는 명칭이 피해자 등 어느 일방만을 돕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법률조력인과의 구별하여 중립적 지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진술중개인의 명칭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다(정현미, 전계 발표자료, 84면).

49)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법무부, 전계 2013년 진술조력인 업무 매뉴얼(안), 66-73면 참조.

50) 다만, ‘진술조력인 선정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성폭력처벌법’ 제38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 등 사건심리·재판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진술조력인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법원은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51) ‘진술조력인 선정규칙’ 제14조(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제4호와 ‘성폭력범죄 등 사건심리·재판규칙’ 제19조 제3항(진술조력인의 선정배제사유) 제4호에 각각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조사과정 참여 전에 사건에 관여한 진술조력인’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같은 취지 : 박중선, 전계논문, 416-417면; 이진국, 전계논문, 49면).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진술조력인의 중립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허위의 통역이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의 책임⁵²⁾보다 과중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허위통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조항(형법 제137조)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⁵³⁾

3. 진술조력인의 양성 및 자격제도의 개선

2013년 12월 19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6년 말까지 82명의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고 자격을 부여 하였으며, 2016년도 총 1,203건의 진술조력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⁴⁾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교육은 ‘성폭력처벌법’ 제35조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에 따라 법무부가 주관한다. 법무부의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아동학대·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증개·보조하는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법무부에서 공지하는 ‘2018년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 공고(2018. 5. 1.)’⁵⁵⁾에 따르면, 진술조력인 양성교육대상자는 매년 10명 내외를 선발하고 있다.⁵⁶⁾

52) 진술조력인은 수사기관과 법원 그리고 형사절차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참여하는 사람과 피의자 및 피고인 간의 의사소통을 증개 및 보조한다는 의미에서 통역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통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에는 재심이유가 되며(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통역인은 허위로 통역한 경우 형법 제154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경우 선서하지 않은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하고(‘국민참여재판법’ 제42조, 제32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60조 제2호).

53) 또한, 중립유지의무의 위반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 상소이유로 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보완도 필요하다.

54) 법무부, 「2017년 법무연감」, 2017. 9, 237면. 법무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2017에는 12명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하였으므로 현재 진술조력인 수는 총 94명으로 집계된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자격이 있는 자 중 일부를 채용하여 전국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에 상근 배치할 것이라고 한다(법무부, “2018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확대 사업계획”, 1면).

55) 법무부홈페이지(www.moj.go.kr) ‘법무뉴스-공지사항’ 참조. 진술조력인 양성교육에서는 총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56) 2018년 법무부의 모집공고에 의하면, 양성교육 이수자 중에서 교육성적, 근태관리, 출석점수 등을 바탕으로 진술조력인 자문단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하며, 진술조력인 자격 소지자 중 일부를 서류·면접 등의 경쟁을 통하여 선발하여 해바라기센터·

진술조력인에 관한 예산의 부족으로,⁵⁷⁾ 해바라기센터⁵⁸⁾ 등에서 상근하는 진술조력인은 아직 몇 명되지 않고, 비상근으로 일을 하는 진술조력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수사기관의 경우 건당 약 20만원, 법원의 경우 5만원에 불과하다. 일부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진술조력인이 없거나, 예산상의 부족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의 원스톱지원센터에 배치된 진술조력인을 활용하기도 한다.⁵⁹⁾

진술조력인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우선 진술조력인의 수를 늘려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해바라기센터 등 아동학대나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관련기관에서 상근하는 진술조력인의 수를 대폭 증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36조 제1항과 제37조 제1항의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함으로써 임의적 이용제도에서 필수적 이용제도로 바꾸어야 한다.⁶⁰⁾

한편, 진술조력인제도의 확대가 필요한 만큼 진술조력인에 대한 자격관리의 중요성도 커진다. 진술조력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의 중개나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실제적 진실규명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객관적으로 진술을 전달하여야 하는 중립의무가 있으며, 의사소통전문가로서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의 대체보조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전문성의 제고 및 질적 향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진술보조인의 자격의 취득이나 관리는 현재와 같이 정부(법무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격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관련시설 등에 상근직 진술조력인으로 채용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57) 예컨대 ‘2016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편성 현황’에 의하면,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피해자 국선변호사지원 사업비로 39억원이 편성되었음에 반하여,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사업비는 약 5억5천만원 정도 편성되었다(법무부, 「법무연감」, 2017. 9, 242면).

58)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의하여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서, 지금까지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전문상담소,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등 여러 센터를 2014년부터 기능조정 및 명칭단일화를 통하여 통합된 기구로서, 2017년말 현재 전국에 38개소(위기지원 16, 아동·청소년 8, 통합 14)가 설치·운영 중이다(여성가족부, 「2018년 해바라기센터사업안내」, 2018. 1, 4-9면).

59) 도중진, 전계논문, 55면; 문화일보, “예산없어 진술조력인제도 활용 저조”, 2014. 3. 2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

60) 같은 취지 : 도중진, 전계논문, 55면; 박종선, 전계논문, 417면.

의 취득 및 상실·정지·취소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술조력인의 보수교육 등 질적 관리까지 국가기관이 담당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술조력인 자격은 주무부처가 관리·감독하되 교육훈련 및 자격심사, 보수교육은 민간기관이 담당하는 공인자격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술조력인 자격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⁶¹⁾ 다만 진술조력인 자격이 국가자격이든 공인자격이든 간에 주무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하는 자격으로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진술조력업무와 관련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⁶²⁾ 업무품질 평가기준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진술조력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자격유지여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진술조력인 선정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진술조력인의 전문성 관리강화방안으로서 1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진술조력인을 평가하거나 자격의 유지·관리를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진술조력인의 업무품질과 공익성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진술조력인의 자격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민간기관의 교육·훈련의 결과에 대한 심사 및 평가와 실제 형사절차상 진술조력업무의 수행에 따른 결과에 대한 능력평가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술조력인의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는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받아 조사 및 재판을 진행한 사법기관으로부터의 평가와 진술조력인 본인이 담당했던 사건에서 진술 조력업

61) 진술보조인의 전문성 제고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등은 민간협회 등에게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는 영역이며 이처럼 업무의 위임·위탁으로 인하여 업무의 부담이 경감됨으로써 제도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진술보조인에 대한 보수교육이나 정보공유 등은 민간기관인 ‘진술조력인협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한다(Intermediaries for Justice, <http://www.intermediaries-for-justice.org>).

62) 장애인 및 아동과의 의사소통의 방식은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론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형사절차 이외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는 임상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적 결과들을 진술조력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임상경험에 대한 교육 및 훈련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해당 교육 및 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심사·평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진술조력인에 대한 심사 및 평가는 자격관리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에 설치된 관련분야 전문가 중심의 “진술조력심의위원회(가칭)”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심사 및 평가에 요구되는 자료로서 교육훈련 이수 및 평가결과, 사법기관의 평가결과, 진술조력업무 결과보고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4. 진술조력제도의 확대

현재 진술조력제도는 아동학대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만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동학대나 성폭력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진술조력의 대상범죄를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⁶³⁾⁶⁴⁾ 진술조력인제도가 형사절차에서의 진술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피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⁶⁵⁾

63) 만약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절차에의 참여의 기회가 의사소통의 장벽에 의하여 저해된다면 그것은 헌법상 사법절차에 대한 평등한 참여를 그 본질적인 내용의 하나로 하는 법 앞의 평등 및 평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의미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한편, 경찰청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정신장애 범죄자수를 보면, 2011년에 5,537명에서 2012년 5,298명, 2013년 5,858명, 2014년 6,265명, 2015년 6,980명, 2016년 8,287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경찰청, “경찰범죄통계”, 2011-2016(<http://www.police.go.kr>) 참조).

64)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가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장애인인권 상담전화통을 통해 진행한 학대관련 상담 사례는 총2,171건이었으며,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경제적 학대로 전체 학대상담의 38.4%(1,042건)를 차지하고 있다(함께걸음(<http://www.cowalknews.co.kr>)).

65) 의사소통의 장애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즉 피해자, 증인 또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Benedet, Janine/Grant, Isabel, Taking the Stand: Access to Justice for Witnesses with Mental Disabilities in Sexual Assault Cases, Osgoode Hall Law Journal, Vol. 50 Issue 1, Fall 2012, p.34; Zajac, R/Hayne, H., “I Don’t Think That’s What Really Happened: The Effect of Cross-Examination on the Accuracy of Children’s Repor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Vol.9, No.3, 2003, p.191).

이것은 무기평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그리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진술거부권 등)를 고지받을 권리 그리고 실체적 진실규명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술조력인제도는, ①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범죄유형의 확대와, ② 진술조력 지원대상의 확대 등 두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진술조력인을 필요로 하는 범죄의 유형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학대나 특정강력범죄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⁶⁶⁾ 장기간의 학대나 법익침해상태의 지속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인 불안과 폐쇄적 자기보호본능에 의하여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의사소통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중범죄들을 모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강력범죄와 보복범죄는 증인의 진술을 어렵게 만드는 범죄들이라고 본다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1항에 정한 ‘특정 강력범죄’에는 살인범죄(제1호),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제2호), 성폭력범죄(제3호 및 제4호), 절도와 강도의 죄(제5호) 그리고 범죄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제6호) 등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들 중 범죄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의 죄와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경미한 재산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이 필요한 영역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진술조력을 받는 대상의 범위가 확대해야 한다. 진술조력의 지원대상 확대는 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증인, 참고인, 피의자, 가해자 등에게 까지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연령상의 제한을 확대하는 것도 포함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국의 경우 ‘진술조력인제도(Witness Intermedisry Scheme :WIS)’를 2004년에 도입하여 시험적으로 운영하다가 2008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진술조력의 대상자를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있다.⁶⁷⁾ 영국은 또한 의사소통

66) 독일의 ‘형사소송법’ 제406g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인하여 심리적인 충격을 겪은 피해자를 위한 조력인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주단위로 각각의 프로그램에 따라 진술조력을 받을 피해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모든 범죄의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제도를 이용하도록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조상제, 전개논문, 291면).

67) 김정혜, 전개논문, 65면 이하.

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검찰 측 증인과 피고인 측 증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⁶⁸⁾ 이스라엘의 Youth Investigator제도는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14세 미만의 아동이 주 대상이지만 아동이 성폭력 피의자이거나 목격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⁶⁹⁾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가사소송에도 활용되고 있다.⁷⁰⁾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13세 미만이라는 연령적 제한을 두더라도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가 없어야 한다. 또한 진술조력의 대상을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의 피해자'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모든 피해자, 증인, 피의자, 가해자'에게도 확대해야 한다.⁷¹⁾ 왜냐하면 진술조력인제도의 취지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조사과정이나 신문과정에서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아동이나 장애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진술조력의 대상자가 반드시 피해자나 피해자증인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진술조력인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① 현행제도 내에서 진술조력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 ② '형사소송법'에 진술조력인제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 ③ 진술조력인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 등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을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여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증인, 참고인은 물론 피의자, 피고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모든 범죄에 있어서 장애인은 피해자, 증인, 피의자, 피고인에 관계없이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

68) 김정혜, 전제논문, 66면; 박지영,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실효성 확보,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와 지원 방안", 「2012 대안을 찾아가는 토론회 자료집」, 2012. 12, 219면.

69) 박종선, 전제 연구용역보고서, 34면.

70) Plotnikoff, Joyce/Woolfson, Richard, op. cit., p.19

71)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의하면, "발달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해도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지 못해 억울한 부분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2016. 7. 16. "강제노역, 성폭행, 사기, 물려오는 범죄에 지적장애인들 눈물" 참조).

도록 규정하고, 아동의 경우 소년법상 가해소년과 피해소년 모두에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⁷²⁾ 아동학대나 성폭력범죄 이외의 범죄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될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형사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 진술조력인제도에 관하여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우선 진술조력인제도가 특수한 영역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서, 모든 범죄유형에 그리고 형사소송절차에 참여하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적이고 일관된 규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⁷³⁾ 그러나 이 방식은 진술조력인 관련 규정이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문에 분산하여 규정될 수밖에 없어서 이 제도를 개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의 참여와 관련하여 중복규정을 두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칭 ‘진술조력인에 관한 법률’을 독립적으로 제정하는 방식이다.⁷⁴⁾ 이 방식은 진술조력인제도를 일괄하여 하나의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규율

72) ‘소년법’상의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으로서(소년법 제2조) 촉범소년(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10세부터 14세 미만), 범죄소년(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호) 그리고 우범소년(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을 포괄하는데 13세 미만이 아니더라도 이들에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비행청소년의 경우 가정이나 사회공동체 등으로부터의 소외에서 오는 폐쇄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제11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516면 이하).

73) 한편, 형사상 진술조력인제도를 모델로 하여 2016년 2월 3일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진술보조인제도’(민사소송법 제143조의2)를 도입하였다(2017년 2월 4일 시행). 형사소송절차상의 진술조력인제도는 아동학대범죄와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영역에서만 인정되는 제도로서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지 않고 개별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적용대상도 범죄피해자에 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민사소송절차상의 ‘진술보조인제도’는 일반법인 민사소송법에 규정하여 내용적으로는 모든 민사사건에, 그리고 적용대상과 관련해서는 원고뿐만 아니라 진술보조를 필요로 하는 모든 소송관계인에게 개방함으로써 민사상 진술보조인제도의 범용적 활용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진술조력인제도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절차상의 진술보조인제도와 같이 범용적 활용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74) 가칭 ‘진술조력인에 관한 법률’에는, 제1장 총칙에서 제도의 목적, 진술조력인의 정의, 업무, 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진술조력인의 의무(성실의무, 비밀유지의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수행 금지의무, 중립의무 등), 진술조력인 자격의 부여, 결격사유, 진술조력인 자격의 관리·감독 등, 진술조력인 자문단의 운영, 진술조력인 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진술조력인 자격의 취소·정지·상실, 진술조력인의 선정(선정절차, 선정금지, 선정취소, 재선정 등) 등의 규정을, 제2장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 등(의사소통 중개·보조의 범위, 진술조서 등의 기재 사항 등, 조사 전 피해자 면담, 조사 후 의견 제출, 진술조력인의

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어서 전체의 체계를 개관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법률의 개정이 용이하며, 두 번째 방식인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의한 방식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다.

생각건대, 입법의 난이도를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첫 번째 방식을 선택하여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하나씩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제고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세번째 방식인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법무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진술조력인의 자격이나 양성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⁷⁵⁾ 이 방식을 선택할 필요성이 더 커진다. 다만 이 방식을 취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진술조력인제도에 관한 근거조항은 두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진술조력인제도는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실제적 진실발견에 기여하고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정의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진술조력인제도를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도입한 주요 선진국가들은 그

수당 등), 제3장 진술조력인의 재판절차 참여 등, 제4장 벌칙 등으로 구성하여, 현행 ‘성폭력 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상의 내용은 물론, ‘진술조력인 선정규칙’과 ‘성폭력범죄 등 사건심리·재판규칙’의 주요내용을 담게 될 것이다.

75) 현재 진술조력인의 자격 및 양성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인 ‘진술조력인의 선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바,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자격의 취소’는 권리의 제한에 해당할 수 있고 이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2. 12, 15면 참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진술조력인제도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이 논문에서는 진술조력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술조력인의 역할 제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진술조력인의 역할 규정을 개정하여 ‘의사소통의 중개 또는 보조를 통한 원활한 조사 또는 원활한 증인신문’ 외에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통한 피해자의 제2차 피해방지 역할’을 명문화해야 한다. 둘째 진술조력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진술조력인의 중립의무는 매우 중요한데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중립의무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사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물론,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준용하여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진술조력인 양성 및 자격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해바라기센터 등 아동학대나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관련기관에서 상근하는 진술조력인의 수를 대폭 증원해야 하며, 진술조력인의 자격은 주무부처가 관리·감독하되 교육훈련 및 자격심사, 보수교육, 심사와 평가는 민간영역에 위임·위탁함으로써 자발적인 자질개선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진술조력의 대상범위를 아동학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아동·장애인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모든 범죄의 피해자, 증인은 물론, 피의자, 가해자에게 확대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일반적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진술조력인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상준,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 항소심의 파기자판 사례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2.
- 김정혜, “진술조력인의 의의와 역할 : 성폭력 범죄 피해 장애인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6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6.
- 김태경·이영호,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양상”, 「한국심리학회지(임상)」 제29호,

- 한국임상심리학회, 2010. 2.
- 김태경·윤성우·서민재·김경옥·한은미, “성폭력 범죄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의 한국형 역할모델”,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3. 10.
- 김현진, “경찰수사절차에서 신뢰관계자 동석에 대한 연구 :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6.
- 도중진,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제도의 실효화방안”, 「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6.
- 류전철, “개정 형사소송법에 투영된 피해자 상”,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8. 10.
- 박광민, “피해자참가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10.
-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제11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 박옥숙, “법률조력인과 함께한 1년, 피해자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 성과평가와 제도적 발전방향”, 「심포지엄 자료집」,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2013. 4.
- 박종선, 「진술조력인 역할모델 정립(연구용역보고서)」, 법무부, 2013. 6.
- _____, “진술조력인제도의 시행과 향후 과제”, 「경희법학」 제48권 제4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2.
- 박지영,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실효성 확보,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와 지원 방안”, 「2012 대안을 찾아가는 토론회 자료집」, 2012. 12.
- 박찬운, “수사절차에서의 장애인의 인권 : 신뢰관계자 동석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7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3.
- 법무부, 「2017년 법무연감」, 2017. 9.
- _____, 「범죄피해자 지원 길잡이」, 2014.
- _____, 「2013년 진술조력인 업무 매뉴얼(안)」, 2013.
- _____,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2012.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2. 12.
- 여성가족부, 「2018년 해바라기센터사업안내」, 2018. 1.

- 염형국,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방안(토론)”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입법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 2012. 6.
- 이미경, “성폭력 법·정책을 통해 본 피해자의 권리 : ‘성폭력수사·재판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6권 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4. 6.
- 이재상,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피해자학연구」 창간호, 한국피해자학회, 1992. 11.
- 이진국, “진술조력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9.
- 이희경, “성폭력범죄 피해실태와 개정법상 피해자보호 및 지원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3. 10.
- 임희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검토”, 「이화젠더법학」 제5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3. 12.
- 장승일,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7집, 한국법학회, 2010. 2.
- 정현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6.
- _____,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제도”. 「이화젠더법학」 제4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2. 6.
- _____,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입법방향”,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입법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 2012. 6.
- 조균석,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보호제도의 운영실태와 그 평가”,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6권 제2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4. 12.
- 조상제, “독일의 성폭력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4. 7.
- 조준현, “형벌론과 형법이론학에 있어서 피해자의 체계적 지위 소고”,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8.

- 최병호,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4.
- Benedet, Janine/Grant, Isabel, Taking the Stand: Access to Justice for Witnesses with Mental Disabilities in Sexual Assault Cases, Osgoode Hall Law Journal, Vol. 50 Issue 1, Fall 2012.
- Fastie, Kinder und Jugendliche als Verletzte von Sexualdelikten, Misshandlung und häuslicher Gewalt auf dem Weg durch das Strafverfahren, in Fastie(Hrsg.), Opferschutz im Strafverfahren, 2008.
- Hanna, Kirsten/Davies, Emma/Henderson, Emily/Hand, Linda, “Questioning Child Witnesses: Exploring the Benefits and Risks of Intermediary Models in New Zealand”,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Vol.20 No.4, 2013.
- Hepner, Hana/Mary N. Woodward/Jeanette Stewart, “Giving the Vulnerable a Voic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Use of Intermediaries with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Vol.22 No.3, 2015.
- Plotnikoff, Joyce/Woolfson, Richard, Intermediari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mproving Communication for Vulnerable Witnesses and Defendants, Bristol, Policy Press, 2015.
- Zajac, R/Hayne, H., “I Don’t Think That’s What Really Happened: The Effect of Cross-Examination on the Accuracy of Children’s Repor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Vol.9 No.3, 2003.

[Abstract]

A Study on Enhancing the Role of Statement Assistant

Kim, Chang-Kuhn

Ph.D. Professor, Jeju National Univ. Law School

Kim, Yu-Jeong

Lawyer, Professor, College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Honam Univ.

The statement assistant system is a system that contributes to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by enhancing credibility of statement if a victim of child abuse or sexual violence is under the age of 13 or has difficulty communicating due to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and contributes to the practice of justice by preventing secondary damage of the victim. In Korea, this system was adopted through the general revis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of Victims’ on December 19, 2012, and has been enforced since December 19, 2013. This is applied in Article 17 of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the Child Abuse’.

However, the right to receive assistance of statement assistant is not applied to sexual violence victims and handicapped children, but to all the people who have difficulty in communication or expression. Advanced countries that adopted the statement assistan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victim protection tend to expand targets for support. Therefore, the expansion of statement assistant system is urgently needed in Korea.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 of enhancing the role of statement assistant for activation of statement assistant system as follows. First, the role definition of statement assistant should be revised to make a stipulation of ‘the role of preventing secondary damage

of victim through assistance for victim’ in addition to ‘smooth investigation or smooth examination of a witness through the intermediation or assistance of communication’. Second, neutral duty of statement assistant is very important, so there should be a method that makes statement assistant obey neutral duty along with punishment regulations on violation. Third, the number of statement assistants that work in child abuse and sexual violence related institutions should be greatly increased by improving the training and qualification system of statement assistant. The qualification of statement assistant should be managed and supervised by relevant authorities, but training, qualification evaluation, refresher training, evaluation and judgement should be consigned to private areas, so that spontaneous quality improvement and management can be done. Fourth, the target range of statement assistance shouldn’t be limited in children of child abuse and sexual violence and the handicapped, but should be expanded to victims of all crimes, witness, suspect and assailant in the long term, so it can be operated as a regular system of the criminal procedure. For this, the current laws should be revised in the short term, and in the long term, ‘Act on Statement Assistant(tentative name)’ should be established.

Key words : light polluti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light pollution,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light-emitting acceptable standard,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unpleasant glare index, unbearable pain